

녹색성장 연구 10-16-13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법제와 정책 연구

박찬호



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against Climate Change in Canada

연구자 : 박찬호(연구위원)
Park, Chan-Ho

2010. 12. 30.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1992년 국제연합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의 160여개 이상의 당사국들은 인위적인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7년 일본 도쿄에서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저감의무를 설정하는 교토의 정서를 채택하였음.
- 교토의정서는 러시아가 비준한 후 2005년 2월 16일자로 부속서 I 국가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었음. 이에 따라 산업국가들은 온실가스배출량을 2008-2012의 기간 동안 1990년 대비 최소 5%를 감축하기로 약속하였음.
- 캐나다는 사라지고 있는 북극 빙하, 가뭄, 해수면상승, 농업, 삼림파괴, 멸종위기종, 전염병, 극심한 기상사건,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기후변화의 환경, 보건 및 경제적 영향을 악화시키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치적·법적 의무가 요구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훌륭한 자연 및 생태적 장점을 유지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보장하며 미래 번영 위한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캐나다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을 검토하고 분석하고자 함.

- 캐나다는 연방국가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사이에 환경문제에 대한 권한배분이 문제되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를 우리나라와 같이 수용하지 않고 변형 입법을 통하여 국내이행을 하고 있는 이원론 국가로서 기후변화 대응관련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법률이 요구됨. 이러한 배경에서 기후변화에 관련한 캐나다 법제를 분석하고자 함.
- 캐나다 기후변화정책과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법제에 시사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정책과 법제 개선방안에 기여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캐나다의 기후변화 규제권한 및 정책

○ 규제권한

- 캐나다에서는 환경과 자원개발에 관한 문제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분권화되어 있음. 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관할권을 갖고 천연자원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관할권을 갖고 있음. 그러한 기후변화는 환경문제일뿐 아니라 자원, 특히 화석연료와 많은 관련을 갖고 있어 개별적인 주의 경제뿐 아니라 캐나다 전체 경제와 관련을 갖고 있음.
- 실제로 온실가스배출 규제에 대하여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의무와 온실가스배출을 유발하는 오일과 가스 개발을 감독하는 알버타 주정부의 권한이 충돌되고 있음.

○ 관할권 결정 요소.

- 헌법상 제정 입법의 성질: 1867년 캐나다 헌법 Section 91과 92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권한의 책임 범위와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현재의 관할기관: 헌법 Section 91과 92와 관련하여 캐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 왔음. 캐나다 의회는 “캐나다의 평화, 질서 및 좋은 정부”에 대하여 입법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주정부는 “주에서 재산과 시민권”에 관한 입법관할권을 갖고 있음.
- 법률의 적용 “사안” 또는 “사안의 핵심과 본질”: 법원이 권한분배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제정 법률의 특징을 갖도록 돕는 분석 수단과 이러한 수단들이 특정한 제정 법률에 대한 문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
- 사안에 대한 목적의 중요성: 특정한 주의 관할권인지 공동의 관할권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 추밀원의 지적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동의한 국제조약 또는 협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은 그 성질상 연방 의회의 권한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관련 관할권을 갖는 정부체제가 그 권한을 갖음. 캐나다 최고 재판소는 Hydro-Québec 사건에서 연방정부의 캐나다환경보호법상 독성물질의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음. 헌법 Section 91과 92는 환경문제에 대한 특정한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환경에 관한 관할권은 각각의 정부 수준에 부과된 권한 책임에 관련된 물리적,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됨.

○ 연방정부 및 알버타주의 정책

-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의 온실가스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음. 캐나다 정부는 모든 캐나다 국민을 위하여 실질적인 환경 및 경제적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건설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지원함.
- 이를 위하여 청정에너지 발전에 세계를 이끌기 위하여 성공적인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 자동차 부문의 온실가스배출 규제, 미국과 청정에너지 협의, ‘보다 청정한,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제공.
- 알버타주는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50퍼센트까지 배출량을 감축하는 배출집약산업에 기초한 목표 관리, 전력, 석유, 운송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특정한 부분과 자발적 감축 협정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주요 기후변화계획으로 함.

○ 캐나다의 북미대륙 및 국제협력 정책

- 캐나다의 온실가스감축목표는 미국 목표에 맞춰 조정할 것임. 캐나다 기후변화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에 맞춰 조정하는 것은 캐나다 경제의 긴밀한 통합, 지리적 접근성, 공유된 환경 공간에 따른 캐나다의 종합적인 접근방법의 중요한 요소임.
- 기후변화문제는 전지구적 문제로서 다양한 다자 및 양자 포럼을 통하여 국제적인 파트너와 함께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작업할 것임.

□ 기후변화 대응 주요 법제분석

○ 교토의정서 이행법률

- 이 법은 2007년 6월 22일에 법률로 제정되었음. 이 법은 교토 의정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조치들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임.
- 이 법에 따라 캐나다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게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제정하여야 함.
- 지구의 벗 캐나다는 2007년과 2008년에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연방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캐나다 법원은 이 법률이행에 대한 평가는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면서,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 오염방지지원청법

- 이 법은 캐나다가 지구 평균표면온도의 증가된 수준과 온실가스 대기농도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따라 위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선진공업국가에게 요구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정됨.
- 이 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는 1999년 캐나다환경보호법의 표 1의 독성물질의 목록과 같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불소화탄화수소(C_nH_XF_(2n+2-X), 0<n<7)와 옥타불화사이클로부탄(C₄f₈)), 육불화황(SF₆)를 말함.
- 이 법은 온실가스감축에 관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음 .

○ 기후변화책임법

- 이 법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출량 감축의 과학적 평가를 결정하는 캐나다의 국가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설정하고 연방 정부가 이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이 법상 ‘온실가스배출량’은 ‘토지이용, 토지이용변경과 삼림관리’를 제외한 국가인벤토리에 산정된 전체 연간배출량을 의미함. 이 법률의 대상물질인 온실가스는 오염방지원청법과 같음.
- 교육복지 관련법령의 전체적 체계를 보면, 관련된 유사법안이 많으며, 이것은 법체계의 복잡성과 그로 인한 법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법적 효율성을 저하시킴.
- 온실가스배출목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첫째, 2015년부터 매5년마다 2045년까지 캐나다 온실가스배출목표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고, 둘째, 기후변화에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 작성한 가장 최근 보고서와 다른 국가정부에 의하여 채택된 가장 엄격한 온실가스배출 목표를 고려하고 각각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과학적, 경제적 및 기술적 증거와 분석을 명시하여야 하고, 셋째, 각 목표는 기후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인 개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캐나다의 책임있는 기여와 교토의정서에 따른 목표와 일치하여야 함.

□ 캐나다 기후변화 대응법제의 시사점

- 캐나다 기후변화 대응법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이행 법률, 오염방지지원청법, 기후변화책임법을 분석함
- 연방정부는 온실가스배출목표설정에 있어 ‘주정부와 지방영토정부와 협력하고 산업계와 협의하여’야 함.
- 캐나다 정부는 온실가스 목표를 충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행동의 이용을 장려하고 다양한 수단을 채택함. 온실가스 배출원들은 기술 기금에 기여하거나 조기감축크레딧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준수 의무를 충족할 수 있음. 또한 배출원들은 국내 및 국제적인 배출권거래와 오프셋을 통하여 준수 의무를 충족할 수 있음.

- 캐나다 정부는 서부지역기후행동계획(Western Regional Climate Action Initiative)와 지역온실가스계획(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과 같은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III. 기대효과

-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캐나다의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관련 법제도에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선진국의 법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함.
- 향후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국제적 의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법제를 분석하고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함.
-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적 자료 제공

▶ 주제어 : 캐나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국제협력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of this study

- In response to increasing concerns over anthropogenic global warming, over 160 parties to the 199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came together in December 1997 in Kyoto, Japan to adopt the Kyoto Protocol.
- Kyoto Protocol became binding upon the thirty-five Annex I nations on February 16, 2005-ninety days after Russian ratification. Pursuant to the Kyoto Protocol, industrialized countries from around the world pledg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t least 5% below 1990 levels by 2008-2012.
- Canada is facing Arctic disappearing glaciers, droughts, sea level rise, agriculture, deforestation, endangered species, infectious disease, extreme weather events, and economic crisis related to those. Canada is required new political and legal obligation to protect the threats aggravating environmental, sanitary, and economic effects of climate change

Purpose of this study

- Canada has prepared Climate Change Response to maintain great natural and ecological merits, keep salubrious community and

secure economic status for the future prosperity. This report is design to examine and analyze Canadian Policy and Legisl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 Since Canada is a federal state, there is issue on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for environment between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and Canada has adopted dualism to implement international commitment such a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Kyoto Protocol. Thus Canada was required the modified legislation on climate change. It seeks to analyze the relevant Canadian legislation in light of the background.
- By analyzing the Climate Change Policy and Legal system of Canada, It seek to contribute to provide Korean efficient policy and legal reform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II. Main Contents

Regulatory Authority and Policy on Climate Change

○ Regulatory Authority

- Th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on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are decentralized between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Federal government commonly has jurisdiction on the environment and state governments have jurisdiction 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But, climate change is not only issue on the environment but related to Canada's entire economy as well as each individual states since it have a lot to

do with resources, especially fossil fuel.

- Actually, the federal government is facing international and internal pressure for Greenhouse Gas regulation. Thus, its commitment conflicts with authority of Alberta, which has jurisdiction over development of oil and gas releasing GHG.

○ Factors determining Jurisdiction

- The nature of enactment under Constitution: Sections 91 and 92 of the Constitution Act of 1867, divide legislative powers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provinces in relation to listed subjects
- The current responsible agency : The Canada Court has suggested interpretation related to Sections 91 and 92 of the Constitution Act of 1867 such as following. The Parliament of Canada has legislative jurisdiction for "Peace, Order and Good Government", and state governments have legislative jurisdiction for "Property and Civil Rights" of each individual state.
- "Issue" or "Nature of Issue" of applicable law: The court's analysis approaches to hold nature of certain legislation for the purpose of "decentralized authorities" and the method to employ the approaches for issues of enactment.
- The significance for objective of Issue: Decision on whether the jurisdiction has been held by a certain state or all states.
- In Hydro-Québec case, Canada supreme court ruled on the legality of the federal government's regulation for toxic substances under the Canada Environment Protection Act. The jurisdiction over the

environment is determined in the light of the phys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related to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held by each governmental level.

○ Federal and Albert's Policy

- Federal government committed to maintain Greenhouse Gas emission in the level of 1990. The government would adopt and support the constructive approaches to achieve substantive environmental and economic interests for all Canadian.
- For this, the government would invest to support building successful clean energy system, Greenhouse Gas Regulation in the vehicle sector, consultation about clean energy with U.S., 'cleaner, more sustainable environment.'
- Alberta's main climate change plan is to introduce various policy such as cap and trade, electricity, oil, transportation and voluntary reduction agreements based on the emission-intensive industries.

○ North America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of Canada would be adjusted to the Target of U.S. It is an important factor of the comprehensive approach, based on intimate economic integration, geographical accessibility and shared environment, in the Canada Climate Change Policy.
- Since climate change is a global problem, Canada would actively and constructively collaborate with international partners through multilateral and bilateral fora.

Main Legislation on Climate Change

Kyoto Protocol Implementation Act

- This act was enacted on June 22 2007. This act is to implement the procedure of the planed measures to meet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as by the Kyoto Protocol concluded.
- Canada should enact law fully to meet the commitment under the Kyoto Protocol.
- Friends of the Earth Canada launched applications for judicial review in the Courts of Canada against the Canadian federal Ministries of Environment and Health for violation of the 1999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CEPA). It is to find non-compliance of the duty under the Kyoto Protocol Implementation Act. But the Canadian Courts had ruled that the assessment of implementation of the act is not the covered object of a lawsuit.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

- This act was enacted to reduce Greenhouse Gas into the similar level which is require of all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to prevent critical climate change, on the basis of scientific evidences for increased level of the Earth surface temperature and effects of GHG atmosphere's concentration.
- "Greenhouse gas" under this act means CO₂, CH₄, N₂O, HFC, C₄F₈, SF₆ identical to figure 1 of Canada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9.

- This act recognize federal and province's authority over Greenhouse Gas Reduction

- Climate Change Accountability Act

- This act requires federal government to establish a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 Target determining a scientific assessment to avoid critical climate change, and take necessary measures to meet the target.
- 'Greenhouse Gas Emission' means total annual emission calculate in National Inventory, except for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The covered substances of this act is the same Greenhouse Gases in The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
- The followings would be considered in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Plan. First, this act requires th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to establish the targets for five-year intervals from 2015 to 2045. Second, the minister should contemplate the IPCC reports and the most rigorous GHG Reduction Target adopted by other national government, and specify scientific, economic and technical evidence and analysis utilized to establish each individual target. Third, the targets should correspond to Canada's responsible contribution to the ultimate objective of UNFCCC and the Kyoto Protocol to avoid critical anthropogenic intervention against climate system.

- Implication of Canada Legal System against Climate Change

- The covered legislations of Canada are Kyoto Protocol Implementation

Act,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 and Climate Change Accountability Act.

- Canada federal government have to cooperate with state governments, provinces and territories for setting the Greenhous Gas emission target.
- Canada government encourages GHG reduction action and adopts to meet GHG target. The GHG large emission sources can meet compliance commitment of GHG reduction through contributing to green technology fund and early reduction credits. The sources can also meet their commitment, utili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Scheme and Offset.
- Canada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have tried to cooperate with United States through Western Regional Cliamte Action Initiativ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and so on.

III. Expected Effect

- Through study on Canadian Climate Change-related Legislation, This report seeks to gain implication and reformation of Korean Legal System against climate change.
- By analyzing the cases of the advanced nation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it seeks to forecast and response Korean possible problems.

- It seeks to analyze international cooperation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 It seeks to provide background data to establish and enforce the related policy for climate change action and reduction of Greenhouse Gas through study and analysis on foreign legislation.

➤ **Key Words : Canada, Climate Change,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cheme, International Cooperation**

목 차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 1 장 서 론	23
제 1 절 연구의 목적	23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5
제 2 장 기후변화에 관한 캐나다의 규제권한 및 정책 분석	27
제 1 절 규제권한 및 관할권	27
1. 연방의 계획	33
2. 알버타 주의 계획	35
제 2 절 캐나다의 기후변화 대응 과정	35
제 3 절 캐나다의 기후변화대응 주요 국내, 북미대륙 및 국제협력 정책	40
1. 주요 국내정책	40
2. 북미대륙협력	47
3. 국제협력	50
제 3 장 기후변화 대응 주요 법제 분석	55
제 1 절 교토의정서 이행법률	55
1. 배경 및 목적	55

2. 주요 내용	57
3. Friends of the Earth v. The Governor in Council and Th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2008 FC 1183	58
제 2 절 오염방지지원청법	59
1. 배경 및 목적	59
2. 주요내용	60
제 3 절 기후변화책임법	63
1. 배경 및 목적	63
2. 주요내용	65
제 4 장 캐나다 기후변화 대응법제의 시사점	71
제 5 장 결 론	75
참 고 문 헌	77

제 1 장 서 론

1

1992년 국제연합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의 160여개 이상의 당사국들은 인위적인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7년 일본 도쿄에서 모여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제한의무를 설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¹⁾

교토의정서에 따라 산업국가들은 온실가스배출량을 2008-2012의 기간 동안 1990년대 수준에서 최소 5%를 감축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국가들은 6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기본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이 이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지만 이 문서는 35개 부속서 I 국가들에 대하여 러시아가 비준한 후 90일 후인 2005년 2월 16일자로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이 의정서에서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들은 1990년 수준 이하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을 위한 각 국의 목표를 충족할 것을 약속하였다. 몇몇 국가들은 그들의 2008-2012년 배출감축목표를 충족하고 있지만, 많은 다른 국가들은 그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지 못하거나 상당히 증가시키고 있다.

캐나다는 사라지고 있는 북극 빙하, 가뭄, 해수면상승, 농업, 삼림 파괴, 멸종위기종, 전염병, 극심한 기상 사건,²⁾ 그리고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환경, 보건 및 경제적 영향을 악화시키는 위협

1)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 3rd Sess., U.N. Doc. FCCC/CP/1997/L.7/Add.1 (Dec. 10, 1997)

2) 착빙성 폭풍우, 엘니뇨 등. Heather Tompkins, Climate Change and extreme wether events: Is there a connection?, Heather Tompkin Cicerone 3/2002, <<http://www.cicero.uio.no/media/1862.pdf>>, pp.3-4 참조.

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준의 정치적·법적 의무가 요구되고 있다.³⁾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막는 것은 캐나다의 훌륭한 자연 및 생태적 장점을 유지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보장하며, 미래 번영을 위한 경제적 지위를 갖추기에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1990년(592MtCO₂e)과 2006년(721Mt)사이에 1990년 수준에서 21.7%까지 배출을 증가시키면서 캐나다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⁴⁾ 교토의정서상의 의무에 따른 배출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06년 보수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어 그 불이행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스테판 하퍼 수상이 이끄는 보수정부는 기후변화기금의 예산을 재검토하였다.⁵⁾ 그리고 교토의정서이행법률의 이행을 거부하고 교토의정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⁶⁾

아래에서는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캐나다 국내정부기관의 권한에 관하여 분석하고 캐나다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에 관한 정책을 분석하고, 주요 캐나다 기후변화대응법제를 분석한다. 캐나다는 조약을 우리나라와 같이 수용하지 않고 변형입법을 통하여 국내이행을 하고 있는 이원론 국가로서 아래에서 다루는 캐나다 기후변화관련 법률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동 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캐나다 기후변화대응법제가 우리법제에 대하여 갖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3) http://www.brucehyer.ca/?Legislation:The_Climate_Change_Bill

4) UNFCCC,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Data for the Period 1990-2006, p.16, Report No. FCCC/SBI/2008/12(Nov.17, 2008), < <http://unfccc.int/resource/docs/2008/sbi/eng/12.pdf>>

5) Canadian Press, Kyoto Funds Shifted to Public Transit Tax Credits, CTV.ca, May 2, 2006, <http://www.ctv.ca/servlet/ArticleNews/story/CTVNews/20060502/budget_environment_060502?s_name=&no_ads>

6) Friends of the Earth v. The Governor in Council and th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2008] F.C. 1183, ¶ 8.

2

캐나다 기후변화대응법제에 관한 연구를 위한 먼저 캐나다 헌법상의 기후변화에 관한 입법관할권에 관하여 먼저 검토하고 캐나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하여 대응해온 과정을 검토한 후 캐나다 정부의 국내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영토정부 협력 관계, 북미지역협력관계, 국제협력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캐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법률이 교토의정서이행법, 캐나다오염방지지원청법, 기후변화책임법을 분석하였다.

제 2 장 기후변화에 관한 캐나다의 규제권한 및 정책 분석

1

캐나다에서 환경과 자원 정책 개발에 관한 주제들은 그 책임권한이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에 분산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천연자원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많은 측면에서 주정부에 그 관할권이 있지만, 국제의무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과 그 의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연방정부가 관할권을 갖기도 한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의 많은 부분이 자원, 특히 화석연료와 관련을 갖고 있어서 개별적인 주의 경제뿐 아니라 캐나다 전체 경제와 관련을 갖는다.

2007년 캐나다 변호사협회 연설에서 전 캐나다 알버타 주지사였던 피터 러피드(Peter Lougheed)는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헌법적 위기를 경고하였다.⁷⁾ 온실가스배출 규제에 대한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적 압력에 직면한 연방정부와 배출을 유발하는 오일과 가스 개발을 감독하는 주의 권한을 지키려는 알버타 주정부 사이에 “주요한 헌법적 다툼”이 발생하였다. 전 알버타 주지사 피터의 관점에서 “대중의 압력”은 강한 연방환경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고, 한편 알버타 주에서 오일 샌드 개발을 이끌고 있는 경제력은 충돌하는 법률의 형태로 알버타주로 부터의 저항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⁸⁾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연방과 주의 정부 명령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인 1867년 캐나다 헌법 Section 91과 92에 따른 타당성 여

7) Peter Lougheed, Address (delivered to the Canadian Bar Association, Calgary, 14 August 2007), <<http://www.cpac.ca/forms/index.asp? dsp=template&acr=view3&pagetype=vod&lang=e&clipID=96>>.

8) Id.

부는 많은 요소를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되어야 할 요소들 중 하나는 제정 입법의 정확한 성질이다. 어떤 종류의 입법은 다른 것들에 비하여 방어하기 쉽다. 예를 들어, Section 91(3)에 따라, 연방 정부 체제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또 다른 요소는 Section 91과 92에서 연방과 주정부 권한의 다양한 책임의 범위와 의미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현재 기관이다. 연방과 주정부의 체제는 그들의 입법을 지지하여 현재 상태에 의존할 것이다.

관련 책임 권한의 경우에, 예를 들어, 의회는 “캐나다의 평화, 질서 및 좋은 정부”에 대하여 입법할 권한을 갖고, 법원은 합리적으로 포괄적인 정의 또는 검증을 진술을 해왔다. 다른 경우에, 예를 들어, 주정부의 입법부는 “주에서 재산과 시민권”에 관련한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의 범위와 의미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 종류의 “사안들”이 어느 책임권한에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관하여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내려진 일련의 결정들에 기초한다. 이러한 경우에, 판사들은 특정한 사건에서 현존하는 법률해석을 적용하도록 부탁받을 때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

세 번째 요소는 법원이 권한분배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제정 법률의 특징을 갖도록 돕도록 창설한 분석 수단과 이러한 수단들이 특정한 제정 법률에 대한 문제 상황에서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의문을 제기한 법률의 적용 “사안” 또는 “핵심과 본질”의 결정에 관한 특성절차가 권한분배 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의 결과에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호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개선시킬 것이다. 재판관들이 그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용한 수단들은 이러한 점에서 그들에게 이용가능한 선택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단들은 많은 경우에 묘책에 대한 많은 여지를 재판관들에게 주는데 충분히 영향을 받는다.

네 번째 요소는 사법부가 이 분야에 입법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작업에 집중하려는 태도이다. 재판관들이 그러한 사건들에 갖는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환경보호의 특정한 상황에서 그리고 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도 아래에 있는 목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법부의 태도는 캐나다 연방주의에 대한 태도이다. 일반적으로 또는 다른 일부 판사들은 지방주의적 성향을 갖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리고 여전히 다른 일부 판사들은 이 분야에서 어떤 성향이든 관계없다고 보고 따라서 공동 관할권에 대해 수용적인 상황에서 일부 판사들은 중앙집권주의적 성향을 갖는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입법에 관한 정부의 양 체제에 대한 수용성은 그러한 시도 아래에 있는 목적의 중요성에 대한 수용에 의하여 높아질 수 있다.⁹⁾

입법의 타당성이 매우 많은 요소들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은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 최고 재판소는 연방주의에 기초하여 환경 입법을 심사하는 작업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첫째, 최고 재판소는 환경을 보호하는 권한은 의회 또는 지방입법부에 배타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해왔다. 라포레스트(LaForest) 대법관은 *Friends of the Oldman River Society v. Canada (Minister of Transport)* 사건에서 8명의 다수의견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867년 헌법은 주 또는 의회에 독특하게 “환경” 문제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환경은 그것의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되듯이 각각의 정부 수준에 부과된 권한 책임에 관련된 물리적,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을 수반한다.”¹⁰⁾

9) Shi-Ling Hsu, Robin Elliot, *Regulating Greenhouse Gases in Canada: Constitutional and Policy Dimensions*, McGill Law Journal, Vol.54, Autumn 2009, pp.478-479

10) [1992] 1 S.C.R. 3 at 63, 88 D.L.R. (4th) 1

라포스트 대법관은 환경은 이렇게 광범위한 의미에서 “상당한 공통 부분과 불확실성 없이는 현재의 권한분배 내에서 적합하지 않은 헌법적으로 난해한 문제”라고 말하였다.¹¹⁾

연방-주 분할의 양 측면에 대한 권한책임의 관계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물리적 환경만을 의미한다는 제한적 의미에서 이해된다고 해도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법학적 관점에서 명백하다. 예를 들어, 의회는 “하나의 주에서 다른 주 또는 주들의 다른 철도를 연결하는 철도”에 관한 관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 사이의 철도의 오염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연안과 내륙 어장 그리고 “캐나다의 평화, 질서 및 좋은 정부”에 대한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어장과 영해의 해수에 해로운 오염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¹²⁾ 유사한 문제로, 주 입법부는 헌법 제92조(13)에 따라 “재산 및 시민권”에 따른 산업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광업과 제조 산업의 오염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¹³⁾ 또한 주입법부는 헌법 제92조(5)와 제92조(13) 또는 제92조(16) 각각에 따라 주의 왕실소유지와 내륙수로에 관한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토지와 수로에 피해를 주는 오염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방법으로 환경보호입법의 타당성에 접근하는 재판소의 의지는 Oldman River 사건에서 라포레스트 대법관이 지적한 이러한 분야에 연방과 주의 입법사항에 대한 많은 공통부분에 큰 영향을 준다. 이론적으로 하나의 오염 활동은 그러한 활동의 원인에 관한 관할권에 기초하여 그리고 그 효과를 경험하는 주체 또는 장소에 대한 관할권에 기초하여 연방과 주 양측 모두에 의하여 규

11) Ibid. at 64.

12) Northwest Falling Contractors Ltd. v. R., [1980] 2 S.C.R. 292, 113 D.L.R. (3d) 1, . R. v. Crown Zellerbach Canada Ltd., [1988] 1 S.C.R. 401, 49 D.L.R. (4th) 161

13) Canada (A.G.) v. Alberta (A.G.) (Reference Re Insurance Companies), [1916] 1 A.C. 588, 26 D.L.R. 288 (P.C.)

14) Oldman River Case, [1992] 1 S.C.R. 3 at 64, 88 D.L.R. (4th) 1

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수로에 들어가는 수로를 포함하고 수로를 소유한 선박회사는 헌법 제91조(10)에 따라 제정된 연방법률과 제92조(13) 또는 제92조(16), 또는 이 둘 모두에 따라 제정된 주법률에 적용될 수 있다. 지방의 법률이 연방법률과 충돌이 된다면, 연방 최고 이론(the doctrine of federal paramountcy)을 적용하여 선박회사는 주법률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최고재판소의 새로운 접근 방법에 따른다고 해도, 이것은 충족하기 쉬운 장애물은 아니다.¹⁵⁾

캐나다 최고재판소는 의회가 “캐나다의 평화, 질서 및 좋은 정부”와 제91조(27)에 따른 형사법권한에 따라 특정한 오염 활동을 규제하도록 허가해왔다. 1998년에 결정된 *Crown Zellerbach*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캐나다의 평화, 질서 및 좋은 정부” 권한에 기초한 국가적 연방해양담핑통제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반대의견 판사들이 지적하였듯이, “이 법에 대상 “문제”(해양오염)가 국가적 사안 문서에 따라 요구되는 성질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 재판소는 연방의회 권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¹⁶⁾ 1997년에 결정된 *Hydro-Québec* 사건에서, 재판소는 헌법 제91조(27)에 따라 캐나다환경보호법의 독성물질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였다.¹⁷⁾ 이 결정에서는 그 규정들이 사실상 금지 되어야 한다기보다 규제사항이라고 보여 진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 두 결정들은 물리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캐나다 최고재판소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환경보호목적을 위한 최고재판소의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반영한 것이다.

15) Robin Elliot, “Safeguarding Provincial Autonomy from the Supreme Court's New Federal Paramountcy Doctrine: A Constructive Role for the Intention to Cover the Field Test?” (2007) 38 Sup. Ct. L. Rev. (2d) 629.

16) *R. v. Crown Zellerbach Canada Ltd.*, [1988] 1 S.C.R. 401, 49 D.L.R. (4th) 161.

17) *R. v. Hydro-Quebec*, [1997] 3 S.C.R. 213, 151 D.L.R. (4th) 32.

Hydro-Québec 사건은 또한 연방과 주 정부 양 체제가 환경보호목적
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입법하도록 하는 정부의 선호도를 반영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라포레스트 대법관은 연방형사법권한의 이용이 주
정부가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고 통제하거나 또는 연방행동을 보충하
기 위하여 제92조에 따른 광범위한 권한의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캐나다환경보호법의 독성물질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제91조(27)의 이용을 주장하였다.¹⁸⁾ 연방형사법권한
의 이러한 특징은 “캐나다의 평화, 질서 및 좋은 정부”의 국가 관련
사안과 그것을 구별한다. “캐나다의 평화, 질서 및 좋은 정부”는 연방
정부가 독성 물질 규정을 인정하는 대안적 기초로서 제기되었다. 다
시 말해서, 제91조(27)을 기초로 그 규정의 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최
고재판소는 환경보호입법을 제정하는 주입법부의 능력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캐나다 정부가 동의한 국제조약 또는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
여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은 단순히 그 법률이 조약 이행 목적을 위하
여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추
밀원의 애트킨(Atkin) 경이 노동협약관련문제에서 지적하였듯이, “제92
조와 제92조의 목적상...조약 입법이라는 것은 없다.”¹⁹⁾ 조약 의무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관할권은 그러한 의무의 주제에 관련하여 입
법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는 정부체제에 있다. 그러므로 연방정부는
단순히 그러한 법률이 교토의정서에 따른 캐나다의 의무의 이행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온실가스배출을 규제할 법률을 제정할 권
한을 갖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

18) R. v. Hydro-Quebec, [1997] 3 S.C.R. 213, 151 D.L.R. (4th) 131.

19) Canada (A.G.) v. Ontario (A.G.) (Reference Re Weekly Rest in Industrial Undertakings Act, Minimum Wages Act and Limitation of Hours of Work Act), [1937] A.C. 326 at 351, [1937] 1 D.L.R. 673 (P.C.)

연방법률이 조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경우에, 최소한 조약의 주체가 국제적인 성질과 의미뿐 아니라 대체로 주를 초월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그 법률이 연방주의에 기초하여 공격받는다면, 조약의무이행목적의 입법이라는 사실은 연방정부의 제정 명분을 갖출 수 있다.²⁰⁾ 이것은 *Crown Zellerbach* 사거에서 르다인(LeDain) 대법관의 다수 의견이다. 이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캐나다의 평화, 질서 및 좋은 정부”에 관련한 국가 관련 사안에 기초하여 연방해양덤펍통제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이 법률은 폐기물과 다른 물질의 덤펍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른 캐나다의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정되었다.²¹⁾ 르다인 대법관은 그 조약의 주체가 국제적인 성질과 의미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대체로 주정부권한을 초월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교토의정서는 그 설명에 적합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배출을 규제하는 연방법률이 그 조약의 이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더 강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1. 연방의 계획

2000년 첫 번째 연방기후변화계획은 상대적으로 특이한 점은 없다. 이 계획은 교토의정서상의 의무사항을 지적하고, 자발적인 완화 프로그램과 다양한 목표가 설정된 조치들을 포함하여 기존 조치, 제안되거나 자발적인 조치들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에 기초하여, 2002년 기후변화계획은 260 Mt 목표 감축을 확인하고 이 목표를 다양한 부문과 프로그램에 할당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가 제안되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량최종배출자가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20) *R. v. Crown Zellerbach Canada Ltd.*, [1988] 1 S.C.R. 401, 49 D.L.R. (4th) 161.

21) 29 December 1972, 1046 U.N.T.S. 120, U.K.T.S. 1976 No. 43 (entered into force 30 August 1975).

라는 것은 확실하였다. 2005년 기후변화계획은 많은 세부적인 캐나다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005년 계획은 캐나다의 계획된 BAU 배출과 교토의정서상의 목표 사이에 차이점을 조정하였다. 2002년 계획에 따르면 이 차이는 240Mt였다. 이것은 이전에 계획되었던 것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 주요 배출집약 부문에 경제적 성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배출량 차이는 270Mt으로 증가하였고, 더 증가할 수 있다.

2005년 기후변화계획은 다음과 같은 요소와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포함 요소	감축 목표
시장기반 접근방법(대량최종배출자에 관한 제도 포함)	36 Mt.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국내 및 국제 배출감축량크레디트를 구입할 기후 기금	75-115 Mt
연방정부와 자동차 산업사이에 특별규약	5.3 Mt.
연방, 주정부 및 지방영토정부 협력 프로젝트 (연방협력기금은 정부 대 정부 비용분담협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다양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다. 이것은 청정석탄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그리고 전력망조직을 포함한다.)	55-85 Mt
농업과 삼림관행변화에 기초한 BAU를 초과한 농업과 삼림조성에 대한 인센티브	10-30 Mt
재생에너지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연방지출과 세계 인센티브	15 Mt.
자발적인 “1 톤 도전”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함	5 Mt.
에너지 효율성과 촉진을 포함한, 다양한 연방지출 계획	40 Mt. 감축

2. 알버타 주의 계획

알버타 주의 기후변화계획은 2002년에 발표되었다. 그것은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50퍼센트까지 배출량을 감축하는 배출집약산업에 기초한 목표에 따른다는 것이고, 둘째는, 전력, 석유, 운송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특정한 부문과 자발적 (협의된) 감축 협정에 의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중 자발적 감축 협정과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 및 배출관리법의 주요 주제이다.²²⁾ 교섭된 규약에 따른 목표를 이행하고,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배출권과 그 이용에 관하여 정의하고, 보고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이 법률에 따른 규제는 현재 발효 중이다.²³⁾

2

1988년 변화하는 대기에 관한 토론토회의(The Toronto Conference on the Changing Atmosphere)에서 46개 국가와 기구들로부터 300여명의 과학자와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기후변화문제를 부각시켰다.²⁴⁾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의 온실가스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유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이 책무는 1992년 지구정상회의와 1993년과 1997년 선거에서 자유당 정부의 공약에서 재확인되었다.

22) Environment Canada, Turning the Corner: Detailed Emissions and Economic Modelling (Minister of Environment, March 2008), p.11, <http://www.ec.gc.ca/doc/virage-corner/2008-03/571/pl_eng.pdf>

23) CLIMATE CHANGE AND EMISSIONS MANAGEMENT ACT, Statutes of Alberta, 2003 Chapter C-16.7, Current as of July 1, 2009

24) Diana M. Liverman, Convention of Climate Change: Constructions of danger and the dispossession of the atmosphere,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Volume 35, Issue 2, 2009, pp.283-284

연방 및 주정부의 에너지환경부장관 공동회의는 2000년까지 최종 온실가스배출량을 안정화하기 위한 옵션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993년 캐나다 정부는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첫 번째 국가기후변화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보고서는 현재의 정책, 계획 및 조치들과 함께, 캐나다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배출량은 전체 88%인데, 2000년에는 1990년 수준 대비 11%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²⁵⁾

1998년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기후변화사무국을 통합시킨 연방기후변화사무국을 설립하였다. 연방예산은 기후변화행동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3년 동안 연간 5,000만달러의 지출을 포함시켰다.²⁶⁾ 4월 에너지환경장관공동회의에서 캐나다의 2차 주요국가 기후변화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이행전략을 위한 옵션을 만들기 위하여 16개의 이해관계자 “이슈 테이블”이 수립되었다.

1999년 12월 캐나다 인벤토리 보고서는 1997년 배출량이 1990년 배출량보다 13% 증가했다고 하였다. 2월에 산출된 연방 예산은 1999년부터 2003년 4개 회계년도에 걸쳐서 5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기후변화관련 지출을 담고 있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연방행동계획 2000은 모든 주요 온실가스배출분야에 조치들에 대한 새로운 지출약속과 함께 10월에 발표되었다. 연방, 주 및 에너지환경부장관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캐나다국가이행전략의 주요 요소들과 국가기후변화사업계획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2000년 첫 번째 연방기후변화계획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²⁷⁾

25) Canada's National Report on Climate Change - 1994, p.36, <<http://unfccc.int/resource/docs/natc/cannce1.pdf>>

26) Environment Canada 1998-99 Estimates- A 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 p.10, <<http://dsp-psd.pwgsc.gc.ca/Collection/BT31-2-1999-III-16E.pdf>>

27) Canada's National Implementation Strategy on Climate Change, National Climate

2001 캐나다도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3차 국가기후변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1994년 발효하였고, 현재 190개 국가들과 유럽경제공동체(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비준하였다. UNFCCC에 대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발효하였고, 캐나다는 이 의정서 1998년 4월 29일에 서명하고, 2002년 12월 17일에 비준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2,185 Megatonnes의 온실가스의 허용배출량을 공약하였다.

2006년 5월 17일, 교토의정서이행법률안(Kyoto Protocol Implementation Act (Bill C-288)이 캐나다 하원에 상정되었고, 이 법안은 제1독회를 통하여 심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19일에는 청정대기법의 온실가스규제와 관련한 개정이 제안되었다. 또한 캐나다 환경보호법(the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CEPA 1999), 에너지효율화법(the Energy Efficiency Act) 그리고 자동차연료소비기준법(the Motor Vehicle Fuel Standard Act)을 수정하는 법안과 함께 청정대기법(Clean Air and Climate Change Act, Bill-30)이 하원에 제출되었고 2006년 10월 19일 제1독회를 하였다.²⁸⁾ Bill-30은 온실가스배출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다루고 있다. 이 법안이 상정된 후 2일이 지나서, 정부는 대기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규제 및 다른 조치들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한 고시(notice of intent)를 발표하였다.

스모그(오존과 오존을 형성할 수 있는 물질뿐 아니라 특정한 사정)과 관련된 대기오염물질은 이러한 물질을 규제하기 위하여 CEPA

Change Process (Gov't of Can./Public Works and Gov't Serv., Ottawa), Oct. 2000, <<http://www.nccp.com>>

28) Frederic Beaugard-Tellier, Sam N.K. Banks, Kristen Douglas, Lynne C. Myers, BILL C-30: CANADA'S CLEAN AIR AND CLIMATE CHANGE ACT, LS-539E, Parliamentary Information and Research Service, 19 April 2007. 참조.

1999에 따라 이용가능한 규제 및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주기위하여 CEPA 1999의 Schedule 1에 규정되어 있다. CEPA 1999의 Schedule 1은 이 법의 section 64에 따라 “유독성”으로 정의된 물질 목록을 담고 있다.²⁹⁾

제38차 회기동안, 정부는 이러한 물질들의 배출을 규제하고 온실가스의 중요한 산업 사업자들(대량 최종 배출자들)에 대하여 배출량거래 제도를 창설하기 위하여 이 법의 일정한 부분을 이용하고자, CEPA 1999의 Schedule 1상 온실가스를 넣고 있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1990년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6%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야 하는 캐나다의 교토 의정서 의무를 충족시키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제39차 회기 동안 캐나다 정부는 그것들을 충족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교토 목표를 거부하였다. Bill C-30은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와 관련된 건강과 환경적 위해성(risk)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007년 2월 15일 교토의정서 이행법률안(Kyoto Protocol Implementation Act (Bill C-288))이 상원에서 제1독회를 통하여 심의를 받았다. 같은 3월 30일, 청정대기법에 관한 법률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4월 26일 캐나다 정부는 “대기배출”에 대한 규제 체계로서 “Turning the Corner” 계획을 발표하였다.

29) 이 법률의 “독성”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 녹색당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캐나다환경보호법(the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CEPA)는 제정 5년차 심사중에 있다. 산업단체는 이 법률에서 “독성”(toxic)이라는 용어를 희석시키고자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 산업단체는 그들이 생산하는 재료에 적용되는 이 용어와 관련한 오명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독성”이라는 것은 정확히 인간건강과 환경에 잠재적으로 위해한 물질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 용어를 약화시키려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게 캐나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동을 취하는 것은 긴급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 법률내에서 이 용어의 정의는 그 대상이 “독성 및 다른 위해한 물질”로 확대될 수 있지만,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 Vision Green, Green Party of Canada, January 2010, p58.

한편, 같은 해 5월 29일 ‘캐나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Canada)³⁰⁾을 대리하여, 에코저스티스(Ecojustice)³¹⁾가 캐나다 정부에 대하여 교토의정서에 따른 캐나다의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음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캐나다 지구의 벗’은 연방정부가 캐나다 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의 Section 166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6월 22일에는 교토의정서이행법률(Kyoto Protocol Implementation Act)이 상원에서 통과되고 여왕의 승인을 얻었다. 또한 8월 9일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기후변화 계획에 대한 기대로, 연방법원은 ‘캐나다 지구의 벗’과 환경부 및 보건부 장관들에 대하여 2007년 5월 소송을 중지시켰다. 8월 21일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계획은 교토의정서이행법률을 준수하지 못했다. 9월 14일, 수상(Prime Minister)의 요청으로, 총독(the Governor General)은 의회를 정회함으로써 수정청정대기법안(the Amended Clean Air Act) Bill C-30이 통과될 가능성을 제거하였다.

30)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연구, 교육 그리고 법률지원을 통하여 공동체들과 지구의 회복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77개국의 환경단체로 구성된 국제NGO이다. 지구의 벗 캐나다(Friends of the Earth Canada)는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의 캐나다 회원단체이다. <<http://www.foecanada.org>>

31) 에코저스티스는 캐나다의 환경법률보호기금이다. 1990년, 에코저스티스 설립자 스튜어트 엘지에(Stewart Elgie)는 뜻이 같은 변호사들을 모집하여 시에라 법률 구호기금(the Sierra Legal Defence Fund)이란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레그 맥데이드(Greg McDade) 변호사가 에코저스티스의 초대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으로 선임되었다. 밴쿠버 시내 동부에 평범한 사무실을 차리고, 그레그 사무총장은 마크 하덕(Mark Haddock)을 고용하였고 이 둘은 환경운동을 시작하였다. 당시에 그레그는 시에라 법률 구호기금은 “캐나다 법이 닿은 적 없는 오솔길을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환경공동체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개업한지 한 달 만에, 원시림과 알락쇠오리(marbled murrelet)와 같은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 기업들을 법정에 세웠다. 그 후 2007년 1월에, 공동 시에라 리걸-오타와 대학 환경법 클리닉(a joint Sierra Legal - University of Ottawa environmental law clinic)이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설립되었고, 오타와 대학에서 스튜어트 엘지에(Stewart Elgie)는 현재 법대교수와 오타와 대학 환경연구소의 부소장을 맡고 있다. 2007년 9월 시에라 리걸(Sierra Legal)은 에코저스티스 캐나다로 이름을 공식적으로 변경하였다. <<http://www.ecojustice.ca>>

2007년 9월 20일,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을 대리하여 에코저스티스(Ecojustice)와 크리스 팔리아레(Chris Parliare) 변호사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교토의정서이행법률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8년 10월 20일, 연방법원은 교토의정서이행법률은 재판에 회부될 수 없다. 즉,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2009년 10월 15일, 연방항소법원은 2008년 10월 20일 결정에 대한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09년 12월 15일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을 대리하여, 에코저스티스(Ecojustice)와 팔리아레 폴렌드 법정변호사는 캐나다최고 법원에 항소 허가를 청구하였다.

3

1. 주요 국내정책

기후변화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지구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캐나다 정부가 모든 캐나다 국민을 위하여 실질적인 환경 및 경제적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건설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지원하는 이유이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것의 환경과 인간 건강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은 현재 인정되고 있다. 캐나다는 다양한 기후를 갖고 있는 영토적으로 큰 국가이다. 이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유이다.

캐나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다른 정부 부처, 지방, 영토 및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함께 작업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원하

고 있다.³²⁾ 2009년 9월, 산업부장관 짐 프렌티스(Jim Prentice)는 코펜하겐 회의에 앞서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주 및 지방영토 주지사와 장관들과 함께 전국적인 회의들을 완료하였다. 이 회의들은 건설적이었고 기후변화에 대한 연방, 주, 및 지방영토의 접근방법들 사이에 시너지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9년 11월 25일 프렌티스 장관은 코펜하겐 대표단에 대하여 모든 주 및 지방영토정부 대표들과 대면 회의를 갖았다.

캐나다 정부는 야심적인 기후변화 정책 및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주정부와 지방영토정부들과 함께 작업하고, 포괄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포스트 2012 국제협정에 대하여 작업할 것을 약속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2020년까지 캐나다 총 온실가스배출을 2005년 수준의 17퍼센트까지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이 목표는 미국 목표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고, 미국 목표와 일치하도록 조정될 것이다.

캐나다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하고 있다.

첫째, 청정에너지 발전에 세계를 이끌기 위하여 성공적인 청정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

둘째, 캐나다 환경청 승용차 및 경트럭 온실가스 배출 규제(안)을 통하여 자동차 부문의 온실가스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엄격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것;

셋째, 미국과 청정에너지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³³⁾

넷째, 2010년 예산에서 ‘보다 청정한,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9천 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투자를 제공할 것; 그리고 국제연합 기후변화 협상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32) <http://www.climatechange.gc.ca/default.asp?lang=En&n=E18C8F2D-1>.

33) 2006년부터 캐나다 정부는 녹색 기반시설, 에너지 효율성, 청정에너지 기술과 청정에너지 및 청정 연료의 생산에 약 100억 달러의 투자하였음.

것과 코펜하겐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포괄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포스트 2012 합의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따른 협상을 완료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2010년에 건설적으로 작업할 것.

2007년 4월, 캐나다 정부는 “Turning the Corner”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캐나다의 접근방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 대륙 및 국제적인 행동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세 가지 병행하는 방법들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캐나다는 캐나다의 경제가 다양한 원칙들, 정책들, 규제 및 표준들을 조화를 이루지 않거나 조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방법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캐나다는 환경을 보호하고 미국과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책과 규제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³⁴⁾

캐나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부터 17퍼센트까지 캐나다 전체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지구적 노력에 기여하기로 공약하였다.³⁵⁾ 이 목표는 미국 목표에 맞춰 조정된 것이고, 미국 목표와 일관성 있게 조정될 수 있다. 캐나다 기후변화정책을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에 맞춰 조정하는 것은 캐나다 경제의 긴밀한 통합, 지리적 근접성, 공유된 환경 공간에 따라, 캐나다의 종합적인 접근방법의 중요한 요소이다.³⁶⁾ 캐나다는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배출을 규제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체에너지원혼합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부분을 증가시키고, 기술개발과 보급을 촉

34) <http://www.ec.gc.ca/default.asp?lang=En&n=4891B242-1>

35) Canada's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Decreased in 2008, News Release, Environment Canada, April 15, 2010, <http://www.ec.gc.ca>.

36)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washington/bilat_can/shared_env-env_part.aspx?lang=eng

진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개발 중이다. 캐나다의 목표는 캐나다 기후, 지리, 성장하는 인구 및 국가에너지성장에 대한 에너지 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것이다.

(1) 경제적 행동계획

캐나다경제행동계획(Canada's Economic Action Plan)은 환경을 보호하고, 캐나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술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된 18억 달러의 녹색투자를 포함한다. 캐나다 정부는 대규모 탄소 포집과 저장 프로젝트에 대하여 6억5천 달러와 최신 에너지 전송 라인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할 녹색기반시설기금으로 10억 달러를 포함하여, 청정에너지연구 및 설명 프로젝트에 대하여 5년간 7억9천5백만 달러를 약속하였다.

(2) 배출량 규제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자동차로부터 온실가스배출을 저감시킬 것을 공약하였다. 캐나다는 2011년식 모델부터 시작하는 미국의 의무적인 국가표준에 맞춰 이미 엄격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수송부문이 캐나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배출량 감축에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3) 에너지 효율성

캐나다는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키기로 공약하여왔다. 42억 달러를 투자한 환경 친화적 에너지 프로그램(ecoENERGY program)³⁷⁾의 성공에 기초하여, 캐나다는 모든 경제 부문에서 에너지 보존과 효율성에 상당한 개선을 이루어왔다.

37) <http://www.ecoaction.gc.ca/ECOENERGY-ECOENERGIE/index-eng.cfm>

이와 같은 일환으로, 환경 친화적 에너지 효율성이니셔티브(the ecoENERGY Efficiency Initiative)는 가정, 빌딩 및 운송에서 스마트 에너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6억 7천5백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2009년에, 캐나다 정부는 친환경에너지 성능개선 가정시설 프로그램(the ecoENERGY Retrofit-Homes program)³⁸⁾에 대한 추가적으로 3억 달러를 할당하였다. 그것은 캐나다 가정에서 에너지절약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2009년 예산은 또한 공공지원주택을 보다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정부 및 지방영토정부와 함께 50:50 비용분담에 기초하여 공공지원주택을 위한 보수와 에너지 성능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2년 동안 10억 달러를 할당하였다.

에너지효율성법률(the Energy Efficiency Act) 수정안은 많은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표준을 도입하였고 몇 가지 기존의 제품들에 대하여 더 높은 표준을 규정하였다.

(4) 재생가능한 에너지

캐나다는 이미 가장 청정하고 재생가능한 전력공급수단을 갖춘, 재생에너지 이용에 세계 리더 국가이다. 캐나다에 최대 재생가능에너지원인 수력전기는 캐나다의 전력 생산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전력생산량은 수력발전에 있어서 세계 2위이다. 원자력에너지, 바이오매스에너지, 풍력에너지와 태양에너지와 더불어, 클린 에너지는 캐나다 전체 전력 혼합량의 약 73%에 이른다.

캐나다 정부는 클린 에너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클린에너지에 대한 성공을 기반으로 할 것을 공약하고 캐나다의 종합적인 전략의 부분으로써 클린 전력 생산에 세계를 이끌고자 한다. 캐나다

38) <http://oee.nrcan.gc.ca/residential/personal/grants.cfm?attr=0>

정부는 또한 2010년까지 휘발유에 그리고 2011년까지 디젤과 난방유에 재생가능한 연료함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규제를 이행하고자 하며, 그 시기는 기술적인 실행가능성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다.

(5) 기술개발과 이용의 촉진

2008년부터 캐나다는 클린 에너지와 기술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과 지방 수준에서 약 110억 달러를 사용할 것을 공약하였다. 2005년부터 클린 에너지와 기술에 연간 연방 투자는 약 50퍼센트까지 증가해왔다.

2009년 캐나다의 경제적 유인 지출의 상당한 부분은 캐나다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인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시연하고, 그리고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탄소 포집과 저장, 전력망 효율성, 자동차 연료효율성, 바이오에너지 그리고 풍력, 태양력 및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관한 것이다.

2010년 예산은 보다 청정한,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체 1억9천만 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조치에 관한 유인적 지출에 기반하고,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내 용	금 액
삼림관리부문에 선진화된 청정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전력이니셔티브	1억 달러
원주민 공동체와 캐나다 환경평가청에 의한 협의	2백8천만 달러
청정에너지발전장비의 열회수 및 지역에너지 관련한 추가적인 지원	비용증액계획
대기질 및 온실가스배출을 포함한 환경자료의 수집을 향상시키기 위한 캐나다 환경지속가능성지표 프로그램	1천8백4십만 달러

(6) 탄소 포집과 저장

캐나다 정부는 2015년까지 민간부문에 탄소 포집과 저장 시범프로젝트에 3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민간투자를 참여시키면서 상업적 탄소 포집과 저장 비용을 감축하도록 계획된 관-민 협력사업이다. 캐나다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에 세계적 선도 국가이고 이 기술의 이용에 탁월한 지위를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 기술의 보급을 지원할 것이다. 캐나다는 또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지구적 협력사업인 지구적 탄소 포집 및 저장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청정 기술의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 캐나다의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탄소 포집 및 저장을 위한 기금에 약 3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하였다.

청정에너지기금은 캐나다에서 3~5개 대규모 탄소포집 및 저장 시범사업을 지원할 것이다. 이들 중 하나는 알버타주에 세계의 첫 번째 완전히 통합된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사업은 알버타주와 협력하여 수행되고 있다.

포트 서스캐처원에서 쉘 캐나다에너지탐색사업에 대하여 7억5천만 달러의 최근 기금 발표와 함께, 알버타주 정부로부터 탄소포집 및 저장 사업에 대한 2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에서 실물크기의 탄소포집 및 저장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스캐처원주 정부로부터 5천만 달러 캐나다 정부로부터 2억4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다.

캐나다의 에코에너지 기술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연방정부로부터 1억5천1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산업부문에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에 대하여 1억5천1백만 달러를 할당해왔다.

다양한 상업화되지 않은 탄소포집 및 저장 사업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기술 캐나다(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 캐나다 정부로부터 1천8백7십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캐나다의 국내 청정기술투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차세대 재생연료의 생산을 위하여 상업적 범위의 시범시설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기술 캐나다’의 차세대 기금을 위하여 5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대중수송,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폐기물 관리를 포함한 사업을 위한 녹색기반시설펀드를 위하여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주정부와 함께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캐나다 공공지원주책에 대한 개조 및 에너지 시설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2년간 13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에코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위하여 42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캐나다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을 지원하고, 보다 청정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2. 북미대륙협력

캐나다는 기후변화가 지구적 해결을 요구하는 세계적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코펜하겐에서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종합적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함께 긴밀히 지속적으로 작업할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부터 17퍼센트까지 캐나다 전체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지구적 노력에 기여하기로 공약하였다.³⁹⁾ 이 목표는 미국 목표에 맞춰 조정된

39) Canada's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Decreased in 2008, News Release, Environment

것이고, 미국 목표와 일관성 있게 조정될 수 있다. 캐나다 기후변화정책을 미국의 기후변화정책에 맞춰 조정하는 것은 캐나다 경제의 긴밀한 통합, 지리적 근접성, 공유된 환경 공간에 따라, 캐나다의 종합적인 접근방법의 중요한 요소이다.⁴⁰⁾

캐나다의 목표는 캐나다 기후, 지리, 성장하는 인구 및 국가에너지 성장에 대한 에너지 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것이다.

(1) 미국과의 협력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실현가능한 목표와 목적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략을 조정하고 함께 작업해왔다. 캐나다는 북미경제가 다양한 원칙, 정책, 규제 및 표준을 조화롭게 하거나 조정하여야 할 부분에서 통합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것은 코펜하겐 합의에 미국 목표와 완전히 맞게 조정된 배출감축목표를 담고 있는 이유이고 미국 목표와 일치하도록 조정된다. 이 목표는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17퍼센트 감축이다.

2009년 2월 19일 하퍼 수상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캐나다 청정에너지담화(the U.S.-Canada Clean Energy Dialogue)를 갖았다.⁴¹⁾ 이 담화의 목적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정에너지 과학과 기술의 개발에 관한 공동작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청정에너지담화행동계획(the Clean Energy Dialogue Action Plan)이 마련되었고, 청정에너지담화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공동계획을 위한 권고를 담고 있다.

Canada, April 15, 2010, <http://www.ec.gc.ca>.

40)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washington/bilat_can/shared_env-env_part.aspx?lang=eng

41)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퍼 캐나다 수상은 환경보호와 청정에너지의 개발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의하고 보다 광범위한 경제 회복과 재투자노력의 주요 요소로써 새로운 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작업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President Obama and Prime Minister Harper vow joint effort on North American economic recovery , Leaders establish Clean Energy Dialogue, discuss global security concerns, 19 February 2009, Ottawa, Ontario, <<http://news.gc.ca>>

- ① 탄소포집과 저장에 초점을 둔, 청정에너지기술 개발과 보급;
- ② 청정에너지 연구와 개발 확대; 그리고
- ③ 청정 및 재생가능한 발전에 기초한 효율적인 전력 그리드 구축.

캐나다는, 미국과 동시에 작업하면서, 환경, 산업 및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접근방법으로 2011년 모델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자동차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공동의 북미 표준을 또한 제정해왔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들은 산업에 대해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고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대한 상당한 기술적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2) 북미 정상 회담

북미 지역 내에서, 캐나다는 주요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멕시코와 함께 노력해왔다. 2009년 8월 북미정상회담에서, 이 세 국가의 정상들은 탄소포집과 저장, 가스 연소 및 에너지 효율성을 포함하여,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⁴²⁾ 그들은 또한 21세기 북미대륙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국제 기후변화 합의의 발전에 계속해서 초점을 두고 다음사항을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환경보호와 경제 번영의 균형을 맞출 것 - 우리는 어느 국가의 성장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장기적인 관심을 갖을 것. - 우리는 2050년까지 배출량에 있어서 최소한 50퍼센트 감축하는 글로벌 목표에 기여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출량에 있어서 강한 감축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적인 정책들을 결정하여야만 한다.

42) <http://www.climatechange.gc.ca>

청정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할 것 - 우리는 시장기반 정책과 전략적 기술 계획과 투자를 통하여 저탄소 기술에 혁신을 활성화하여야만 한다.

건설적인 그리고 야심찬 글로벌 행동을 지원할 것 - 공정하고, 효과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국제기후변화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국제연합 교섭 과정을 통하여 우리 북미 당사국들과 모든 당사국들과 함께 작업한다.

모든 주요 경제체제로부터 공약을 포함할 것 - 우리는 모든 주요 배출국들이 완화 공약을 맡고 각 국가의 책임과 역량에 부합하는 적응 활동을 강화할 것을 확보하여야만 한다.

3. 국제협력

기후변화문제는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다룰 수 없다.⁴³⁾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다자 및 양자 포럼을 통하여 국제적인 파트너와 함께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1) 코펜하겐 회의

캐나다는 기후변화가 지구적 해결을 요구하는 세계적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코펜하겐에서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종합적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함께 긴밀히 지속적으로 작업할 것이다.

43) 기후변화의 특징은 기후변화의 관성과 온실가스의 누적의 결합된 효과, 대응의 긴급성, 지구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지구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은 한 국가(ex. 중국)의 온실가스 1톤과 다른 국가(ex. 미국)의 온실가스 1톤은 같은 무게를 갖는다는 점, 한 국가의 온실가스가 다른 국가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어느 국가도 단독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싸움에 이길 수 없고, 집단적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ht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2007, pp.4-5 참조.

기후변화에 관한 코펜하겐 회의에서, 캐나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다른 당사국들과 공동으로 코펜하겐 합의(the Copenhagen Accord)에 대한 작업을 하였다. 이 합의는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지구적 노력으로 중요한 문서이다. 캐나다는 코펜하겐 합의를 이행하고 포괄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포스트-2012 협정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따라 교섭을 완료하기 위하여 2010년에도 건설적으로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다.

(2) G-20

2009년 이탈리아 L'Aquila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스테판 하퍼(Stephen Harper)는 G8 정상들과 함께 회의를 갖고 산업화이전의 수준 이상으로 지구평균온도에 증가가 섭씨 2 도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광범위한 과학적 견해를 승인하였다.⁴⁴⁾

이를 위하여, G8 정상들은 전체적으로 2050년까지 80퍼센트 이상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는 선진국들의 목적뿐 아니라 2050년까지 지구배출량의 50퍼센트 감축을 성취하는 목적에 대하여 함께 작업할 것을 합의하였다.

(3)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 포럼.

캐나다는 또한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포럼(the 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포럼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제기후변화교섭에서 고려중인 주요 문제들을 제기하기 위하여 전 세계 17개 최대배출자들을 모아서 2009년 3월에 착수한 이니셔티브이다. 이 주요경제포럼에서 2009년 7

44) New Analysis Brings Dire Forecast Of 6.3-Degree Temperature Increase,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25, 2009, <<http://www.washingtonpost.com>>

월, 정상들은 저탄소 및 기후친화적인 기술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시작하는데 합의하였다.

2009년 12월 14일 코펜하겐에서, 스테판 추(Stephen Chu) 에너지장관은 주요경제포럼 기술행동계획을 착수하였고, 그것은 10개 주요 청정에너지기술에 관한 야심적인 정부 행동에 대한 선택사항들을 제공하였다. 이것은 선진 자동차, 바이오에너지, 빌딩에너지효율, 탄소포집, 이용 및 저장, 고효율, 저배출 석탄, 산업에너지효율성, 해양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태양에너지, 및 풍력에너지를 포함한다.⁴⁵⁾

(4)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캐나다는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과 미국과의 관민 파트너십인,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의 회원국이다.⁴⁶⁾ 이 협의체는 청정에너지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하퍼 수상은 2009년 12월에 캐나다는 이 파트너십 아래에서 19개 새로운 청정 기술 프로젝트에 2년간 8백4십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⁴⁷⁾

(5) 중국과 양해각서

캐나다와 중국은 2009년 12월 6일 기후변화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⁴⁸⁾ 두 국가는 완화와 적응을 통하여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장기간의 지구적 노력에 관하여 함께 작업할 것이다. 이 양해각서는 에너지 보존 및 효율성, 재생에너지, 탄소 포집과 저장 메탄 회복 및 이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캐나다-중국

45) The MEF Technology Action Plans, <<http://www.majoreconomiesforum.org>>

46) <http://climatechange.gc.ca/pap-app/default.asp?lang=En&n=FFB91B5D-1>

47) Caroline Bracht & Sofia Viguri, 2009 Pittsburgh G20 Summit Compliance Report on Energy and Climate Change, G20 Research Group, <<http://www.g20.utoronto.ca>>

48) Prime Minister Stephen Harper Welcomes New Agreements with China on Climate Change and Cultural Exchanges, 2009-12-03, <<http://china.gc.ca>>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캐나다는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의 역효과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것은 캐나다가 다른 산업국가들과 함께 코펜하겐 합의에 서술된 바와 같이 개발도상경제가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재정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6) 영연방정상회의

2009년 11월에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수도 포트 오브 스페인에서 열린 영연방정상회의(the Commonwealth Heads of Government Meeting)에서 코펜하겐에서 갖게 될 포괄적인 합의의 일부로서 신속한 재정지원에 대한 제안을 환영하였다. 이 지원기금은 2010년에 시작하고 기부국가들로부터 2012년까지 연간 총100억 달러를 모을 것이다.

영연방 정상들은 또한 이 기금이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 적응을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목표되어야함을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청정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과 삼림파괴와 삼림관리 악화로부터 발생하는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행동을 지원할 것이다.

(7) 기 타

캐나다 정부는 적응에 초점을 둔 다자기구들에 다음과 같이,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2002년과 2010년 사이에 지구환경기금(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신탁 기금에 3억1천8백만 달러를 기부하였고, 그 중 약 3분의 1은 지구환경기금 기후변화관련활동에 직접 전달되었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세계은행의 기후 회복 파일럿 프로그램(the World Bank's Pilot Program for Climate Resilience)에 1억 달러를 기부하였고, 이로써 캐나다는 지금까지 최대기부국이 되었다. 적응과 기술을 위한 특별기후변화기금(the Special Climate Change Fund for adaptation

and technology)에 3천5백5십만 달러를 기부하였고, 기후변화, 농업과 식량안보 문제 프로그램에 따른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을 위하여 5백5만달러를 기부하였다.

제 3 장 기후변화 대응 주요 법제 분석

1

1. 배경 및 목적

자유당 하원의원인 파블로 로드리게즈(Pablo Rodriguez)는 Bill C-288인 교토의정서 이행법률을 제출하였다. 2007년 6월 22일, 이 법률은 상원에서 통과되고 여왕의 승인을 얻었다.

이 법의 목적은 “캐나다가 교토의정서에 따른 캐나다의 의무를 이행하고 지구적 기후변화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돕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교토의정서 이행법은 2007년 6월 22일에 법률로 제정되었다.⁴⁹⁾ 이 법률은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계획된 조치들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교토의정서 이행법률의 제정을 둘러싼 배경과 논점들은 그것의 채택 후 정치적 그리고 법적 상황을 설명한다. 그것은 아래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배경과 논점들에 대한 심사는 현재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Bill C-288은 정부각료가 아닌 일반 의원의 법안으로 하원에 제출되었고 캐나다 정부에 의하여 지지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토의정서 이행법률은 정부에게 정부가 지지하지 않은 입법정책을 강제하고 있다. 게다가, 하원의 대변인은 이 법안은 정부 입안의 특권에 해당하는 재정 법안이 아니라고 하였다.⁵⁰⁾ 이 법안이 재정 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49) PLC-288, Royal Assent, 22 June 2007

50) 제기된 문제들 중 하나는 재정법안의 상정에 관한 정부의 특권이였다. 이 의회 원칙(parliamentary principle)은 영국 제도에서 기인한다. “그것은 중앙 정부의 지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세금을 증가시키거나 부과하는 모든 개정 또는 발의는

엄격하게 말해서 지출을 약속하지 않는 반면, 그것은 정부가 상당한 지출을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한다. 교토의정서 이행법률의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그것이 일반의원의 법안이라는 것, 그 법안에 담긴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반대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의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 공적 자금을 이용해야 할 궁극적인 필요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 내는 과정 동안, 캐나다 의회의 전통과 함께 이러한 관행의 일관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었다.⁵¹⁾

어쨌든, Bill C-288은 통과되었고 현재 발효 중이다. 이것은 이 법률의 법적 함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문제는 정부가 교토의정서의 법적 의무와 이 법에 따라 취하여야 하는 특정한 조치들을 준수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의 법적 골격은 교토의정서 이행법률에 의하여 창출된 의무의 개요를 제공하고 비준수의 경우에 이용가능한 제재를 제공한다. 교토의정서 이행법률이 제정된 후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심사는, 정부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절차를 포함하여, 캐나다 정부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채택된 정부 행동의 성질과 그러한 행동들에 대한 대응을 다룬다.

여왕의 권고를 받아야만 하는 헌법적 관습이고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즉, 그것은 각료에 의하여 제안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반드시 재정권한은 정부에 속하며 일반의원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일반의원에 의하여 제안된 법안이 그것의 목적의 이행을 위하여 공적 자금의 지출을 요구한다면, 당해 의원은 각료 중 하나가 재정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할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한다. ; 그렇지 않으면 그 법안은 통과될 수 없다.” Stanley de Smith and Rodney Brazier,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6th Ed., Penguin Books, London, 1990, pp.229-230, Robert Dufresne, *KYOTO PROTOCOL IMPLEMENTATION ACT: IMPLEMENTATION AND CONSEQUENCES*, PRB 07-40E, PARLIAMENTARY INFORMATION AND RESEARCH SERVICE, 27 Nov 2007, p4, 각주 12번에서 재인용

51) *Proceedings of the Standing Senate Committee on Energy, the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Proceedings-No.80(22 March 2007); *Proceedings - No.82*(27 March 2007); *Proceedings -No.83*(28 March 2007); *Proceedings -No.84*(29 March 2007).

2. 주요 내용

이 법률의 Section 5는 이 법률이 발효한 후 60일 내에,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계획을 준비하고 그 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률은 캐나다가 교토의정서의 제3조 1절에 따라 캐나다의 의무를 충족할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계획에 설명되어야 할 조치들의 특정한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Section 7은 이 법률이 발효하고 180일 이내에(2007년 12월 19일까지), 의회 의장은 “캐나다가 이 법 또는 어느 다른 법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제정하고, 수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교토의정서의 제3조 1절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게 충족할 것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법률 Section 8은 규제를 제정하기 최소 60일 전에, 의회 의장은 (a) 2012년까지 시행하려는 규제로부터 매년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온실가스배출감축량을 규정하고, (b) 이 규제의 공개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성명과 함께 협의 목적을 위하여 규제안을 공개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Section 9는 이 법률이 발효한 후 120일 내에(2007년 10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은 캐나다가 Section 7에 따라 교토의정서 의무를 완전하게 충족할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거나 제정하려는 각각의 규제로부터 2012년까지 매년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온실가스배출감축량을 규정하는 성명을 준비하여야 하고, 그 후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은 그 성명을 공개하고 각 의회에 상정하여야만 한다고 요구한다.

3. Friends of the Earth v. The Governor in Council and Th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2008 FC 1183

교토의정서이행법률(The Kyoto Protocol Implementation Act)은 캐나다 정부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진지한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법률이다. 이 법은 캐나다 정부가 기후변화계획의 작성과 캐나다가 국제적인 의무를 충족할 것을 확보하는 규제의 제정을 포함하여 준수하여야만 하는 일련의 법적 요건과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신청의 청구이유는 환경부 장관이 무엇보다도,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구속력있는 규제를 제정하라고 하는 교토의정서의 제3.1조에 따른 캐나다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취할 조치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기후변화계획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캐나다 정부는 교토의정서이행법률의 Section 5, 7, 8 그리고 9에 따른 정부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선언을 구하는 것이었다.

지구의 벗을 대리하여, 에코저스티스(Ecojustice)와 크리스 팔리아레(Chris Paliare) 변호사는 이 법률에 대한 정부의 비준수에 대한 사법심사를 위하여 2007년 9월에 법적소송절차를 착수하였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정부가 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선언과 정부가 이 법률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직무집행영장의 성질의 명령을 구하였다.

신청은 6월에 토론토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갖고 결정은 2008년 10월 20일에 내려졌다. 이 법원은 이 법률자체는 이 법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재판에 회부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동 당사자들은 2008년 11월 25일, 연방법원의 결정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항소법원에 환경부장관과 의회의장이 교토의정서이행법률

을 위반하고 있다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항소하였다. 2009년 10월에 연방항소법원은 지구의 벗의 항소를 심리하고 하급법원의 결정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2009년 12월 15일, 당사자들은 이 사건을 캐나다 최고법원에 상소하기 위한 허가를 구하였으나, 그 항소는 캐나다 최고법원에 의하여 각하되고, 소송은 종료되었다.

캐나다 최고법원은 연방정부가 교토의정서이행법률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구하는 지구의 벗 캐나다의 신청을 심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⁵²⁾

기후변화는 우리의 사회, 환경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의 정도가 증가하면서 사법적 지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생활의 방식에 대한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이다. 에코저스티스(Ecojustice)는 현재 그리고 미래 캐나다인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책임이 캐나다 정부에 있고 기후변화에 관한 책임있는 행동을 채택할 것을 강제하는 것에 우리 공익을 대변하는 것에 헌신하고 있다.

2

1. 배경 및 목적

이 법률은 캐나다가 지구 평균 표면 온도의 증간된 수준과 온실가스 대기농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따라 위협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선진 공업국가에게 요구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률에 의하여 캐나다 정부는 오염방지지원청을 설립한다. 오염방지지원청은 온실가스의 또는 제거의 결과로 얻은 인증 크레딧의

52) Supreme Court rejects Friends of the Earth appeal, <http://www.ecojustice.ca/media-centre/press-releases/supreme-court-rejects-friends-of-the-earth-appeal-1>.

거래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감축 또는 제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³⁾

오염방지지원청법의 목적은 캐나다가 위험한 인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개입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대기에 온실가스농도의 안정화에 충분히 기여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⁵⁴⁾

캐나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⁵⁵⁾ 장기 목표로서 2050년까지 1990년도의 80%이하의 수준으로 그리고 중기목표로서 제6조(1)항에 규정된 목표계획에 앞서 2020년까지 1990년도의 25% 이하의 수준으로 감축하여야 한다.

잠정적인 캐나다 온실가스배출 목표 계획은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 협약과 당사자총회가 채택하는 모든 관련 법적문서의 궁극적 목적은,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한 수준은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식량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경제개발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기에 충분한 기간 내에 달성되어야 한다.⁵⁶⁾

2. 주요내용

이 법률이 다루는 “캐나다온실가스배출량”은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와 삼림의 배출량을 제외한 국가인벤토리에 산정된 전체 연간배출량을 의미한다.

53) 제6조.

54) 제3조.

55) 제5조.

5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2조, [발효일 1994.03.21] [다자조약, 제 1213호, 1994.03.15]

“온실가스”는 부속서 A에 열거된 1999년 캐나다환경보호법의 표1의 독성물질의 목록과 같은데,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불소화탄화수소(C_nH_XF_(2n+2-X), 0<n<7)와 옥타 불화사이클로부탄(C₄f₈)), 육불화황(SF₆)를 말한다.⁵⁷⁾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관할권은 연방정부에 있지만, 이 법률은 주정부에 의한 권한도 인정하고 있다. 확실하게, 이 법에 어느 것도 주에 의하여 확립된 수단들에 의하여 온실 가스의 감축 또는 제거의 결과로서 창출된 적합한 크레디트를 갖는 그 주를 대신하여, 그러한 크레디트가 창출되기 전 또는 그 후에, 매입을 통하여 온실가스의 감축 또는 제거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의 권한을 명백하게 또는 묵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의 목적상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99 캐나다 환경보호법의 제322조에 따라 설립된 어느 프로그램 또는 조치 하에 교부된 거래할 수 있는 배출량의 어느 종류 그리고 제2조에서 “인정된 교토 배출량”의 정의의 목적상 인정된 종류로서, 의무준수배출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⁵⁸⁾

이 법률은 캐나다 오염방지지원청이라는 법인을 설립한다. 그 기관은 캐나다의 권한 내에서 여왕의 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기관은 “기후펀드”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⁵⁹⁾

이 기관의 목적은 캐나다 정부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 또는 제거의 결과로 발생한 크레디트의 거래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감축 또는 제거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⁶⁰⁾

오염방지지원청은 종합적인 목표에 대한 책임과 지휘권은 장관이 갖고, 장관이 부여한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57) 제2조

58) 제3조(b)

59) 제4조(2)

60) 제6조.

이사회는 이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고, 기관장은 이 기관의 최고 경영자이고 이 기관의 업무와 직업에 관한 감독권과 지휘권을 갖는다.⁶¹⁾ 이사회는 3년이 넘지 않는 임기로 12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한다.⁶²⁾ 이사회는, 농업, 에너지, 및 산림영역, 환경단체 또는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정부로부터의 사람, 그리고 온실가스의 감축 또는 제거에 관련한 국내 및 국제적 크레디트에 대한 시장에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관련 지식을 갖춘 자 또는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⁶³⁾

제12조는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수상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임기로 12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임명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기관의 목적 내에 있는 문제에 관하여 장관에게 자문한다. (a) 온실가스배출량의 상당한 감축을 낳을 수 있고 캐나다 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의 유형들, (b) 인정된 국내 크레디트와 인정된 교토 감축량에 관련한 시장조건. 장관은 조언을 구한 후 30일 이내에 위 (2) 항에 따라 구한 조언을 공표하여야 한다.⁶⁴⁾

분쟁의 발생시 이 기간의 권리 또는 의무, 또는 이 기관의 조치, 또는 이 기관과 관련한 소송 또는 다른 법적 절차에 이 기관의 이름으로 관할권을 갖는 법원에서 분쟁당사자가 될 수 있다.⁶⁵⁾

이 기관은 경쟁적 절차를 통하여 인정된 국내 크레디트를 취득할 수 있고⁶⁶⁾ 캐나다에 이익이 된다는 요건하에 인정된 교토배출량을 취득할 수 있다.

61) 제7조 및 제8조

62) 제12조(1)

63) 제13조

64) 제12조(3.1)

65) 제15조

66) 제16조

3

1.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책임법(Climate Change Accountability Act)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출량감축의 과학적 평가를 결정하는 캐나다에 대한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또한 연방 정부에 위 목표가 충족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변화책임법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공정한 책임에 합당한 국가배출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채택하는 캐나다 의회의 결정은 지구온난화를 막고 그것의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캐나다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전세계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다.

캐나다 기후경제학자인 M.K. Jaccard의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는 2%의 경제성장과 10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과학에 기초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의 배출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하였다.⁶⁷⁾ 기후변화책임법의 2050년 배출감축목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미국배출목표와 같다.

2008년 4월 6일 기후변화책임법안(C-377)은 하원의 다수로부터 지지를 얻었지만 상원에서 계류중에, 의회가 2008년 가을에 해산하면서 이 법안은 입법절차를 완료할 수 없었다.

2009년 기후변화책임법안(C-311)은 캐나다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하여 캐나다 국민들에게 책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08

67) Pembina Reacts: Government of Canada Accepts Science-Based Limit on Global Warming, July 8, 2009, <<http://climate.pembina.org/media-release/1856>> 2010년 7월 25일 최종방문

년 선거 때문에 상원에서 폐기되기 전 하원을 통과하였던 C-377로 소개되었던 회기에 제시된 법안과 사실상 동일하였다.

신 민주당 하원의원인 Bruce Hyer는 신 민주당 총재인 Jack Layton의 제청을 받아 의원법안으로서 이 법안(C-311)을 다시 제출하였다. 환경과지속가능한발전에 관한 하원상임위원회의 C-311법안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의 요청이 하원에 2009년 10월 21일 투표에서 받아들여져, 이 법안의 심의는 2010년까지 연기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교토의정서 후속협약교섭에서 캐나다 정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그후, 기후변화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당파적인 문제가 될 수 없었고 캐나다 의회의 모든 당들은 기후변화대응행동을 위한 그들의 지지를 선언하고, 모든 하원 및 상원 의원들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방지함에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선언하였다. 신 민주당은 캐나다 의회에 여름 휴회 전에 이 법안에 대하여 함께 작업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지난해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하원상임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안은 훨씬 더 긴급한 사안이 되었지만 법안 자체나 이 법안을 기초하고 있는 과학은 변하지 않았다.

이 법안이 캐나다 기후정책의 전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법은 국가배출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계획의 준비는 환경부장관에게 주어진다. 한편, 선진국들에 대한 강한 목표 설정은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 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금융지원 등에 관한 문제는 이 의원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 주요내용

기후변화책임법은 캐나다가 위험한 기후변화를 예방을 함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기후변화가 캐나다의 경제적 복지, 공공보건, 자연자원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캐나다 영토에서, 특히 북극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밝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가 2℃이상 상승할 경우 위험한 기후변화라는 합의를 담고 있다.

이 법률의 제정은 캐나다가,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의 증가된 수준과 온실가스 대기농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따라, 위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선진 공업국가에게 요구되는 유사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확보하도록 의도되었다.

기후변화책임법은 소제목, 정의, 목적, 여왕, 캐나다의 잠정적인 온실가스 배출목표 계획, 규제, 총리, 기대감측량, 벌칙, 국가보고서, 환경과 경제에 관한 국가원탁회의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법은 정의 규정에 따르면 ‘온실가스배출’을 ‘토지이용, 토지이용변경과 삼림관리’ 제외하고, 국가인벤토리에 측정된 전체 연간배출을 의미한다.⁶⁸⁾

이 법률이 다루는 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₂), 메탄(methane, CH₄),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N₂O), 수소불화탄소(hydrofluoridocarbon, 0<n<6인 C_nHXF(2n+2-X)), 과불화탄소(perfluorinated hydrocarbon, 0<n<7인 C_nF_{2n+2}, 그리고 octafluorocyclobutane, C₄F₈), 육불화황(sulphur hexafluoride, SF₆)이다.⁶⁹⁾ 이 물질들은 1999년 캐나다환경보호법의 표1에 독성물질의 목록에 열거되어 있는 것과 같다.

68) 제2조 1절.

69) 제2조 3절.

이 법률의 목적은 캐나다가 위협한 인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개입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대기에 온실가스농도의 안정화에 충분히 기여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 캐나다 정부의 장기목표로서 2050년까지 1990년도의 80% 수준 이하의 수준으로 그리고 중기 목표로서 제6조 (1)항에 규정된 목표 계획에 앞서, 2020년까지 1990년도의 25% 이하의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만 한다.⁷⁰⁾

캐나다의 이 법률에 따른 잠정적인 온실가스배출목표계획은 이 법이 여왕의 동의를 얻은 후 6개월 내에 첫 번째 온실가스배출목표계획을 준비하고 공포하여야 하며, 2015년부터 5년마다 잠정적인 온실가스배출목표계획을 공포하여야 한다.⁷¹⁾ 이 온실가스배출목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2015년부터 매5년마다 2045년까지 캐나다 온실가스배출목표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여야 하고,⁷²⁾ 둘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작성한 가장 최근 보고서와 다른 국가정부에 의하여 채택된 가장 엄격한 온실가스배출 목표를 고려하고 각각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과학적, 경제적 및 기술적 증거와 분석을 명시하여야 한다.⁷³⁾ 셋째, 각 목표는 기후체계에 대한 위협한 인위적인 개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캐나다의 책임 있는 기여와 그리고 교토의정서에 대한 의회의 강한 목표와 일치하여야 한다.⁷⁴⁾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2015년에 시작하여 적어도 매 5년마다 한 번씩 목표 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하고, 개정된 목표 계획은 앞의 모든 요건

70) 제5조

71) 제6조 (1)

72) 제6조 (1)(a)

73) 제6조 (1)(b)

74) 제6조 (1)(c)

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⁵⁾

캐나다 수상은 연방헌법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만들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환경에 배출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의 제한; (b) 제5조에 따라 만들어진 각 주의 감축의무와 제6조에서 규정된 잠정적인 캐나다 온실가스배출 목표를 적용함으로써 각 주에서 배출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 제한; (c)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계획된 이행표준의 확립; (d) 온실가스배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어느 장비, 기술, 연료, 운송수단 또는 절차의 이용 또는 생산에 관련된 사항; (e)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f) 온실가스배출감축, 제거, 허가, 크레딧, 또는 다른 할당량의 거래에 관한 사항; (g)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제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감독, 검사, 조사, 보고, 집행, 처벌 또는 다른 문제에 관한 사항; (h) 고발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서 사인 또는 사인의 집단에 의한 규제 규정 또는 일련의 규정들의 위반행위에 관한 지정 또는 그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양과 구류에 관한 즉결심판과 처분에 관한 사항; 그리고 (i) 이 법의 목적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른 문제들에 관한 사항. 한편, 이 규정에 의한 제정된 규제는 제5조가 규정한 캐나다 감축의무를 충족하고 제6조에 규정한 잠정적인 캐나다 온실가스배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⁷⁶⁾

제7조(1)에 따르면 (a)부터 (i)까지 사항은 연방수준에서 제정할 수 있는 규제이다. 또한 동조 (2)항에서는 온실가스배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각 주가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수상의 권한과 그 행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9조(1)는 수상이 이 법에 따라 캐나다가 제5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75) 제6조 (2)

76) 제9조 (1)(c)

의무의 이행과 제6조에 따른 잠정적인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a) 모든 국제적인 기후변화 논의에서 그리고 정부와 다른 주체들과 함께 모든 교섭에서,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총회의 결정 및 교토의정서의 당사국회의로서 기능하는 그 총회의 결정으로부터 나온 논의와 교섭에서, 캐나다의 입장은 제5조에 따라 만들어진 감축의무와 제6조에 규정된 잠정적인 캐나다 온실가스배출 목표를 충족함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보하여야 함; (b) 캐나다 정부의 정책은 제5조에 따라 규정된 감축의무와 6조에서 규정된 잠정적인 캐나다 온실가스배출 목표를 충족함에 있어서 충분히 일관성이 있을 것을 확보하여야 함; (c) 제7조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필요한 규제들을 만들고, 수정하거나 또는 폐지. 특히, 캐나다가 제5조 (a)항에 규정된 목표와 제6조에서 규정된 잠정적인 캐나다 온실가스배출 목표를 충족할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1)항에서 만들어진 규제들은 제9조 (1)항 (c)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수정되거나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⁷⁷⁾ 또한 수상은 위 (1)항과 (2)항에 따라,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그것의 감축의무를 충족할 것을 확보함에 있어서, 수상은 정부지출과 연방-주간 협정을 포함하여, 다른 정부 조치들의 이행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제9조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의 온실가스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캐나다의 국제적인 협력과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협력을 전제하고 있다.

제10조는 기대감축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0조(1)(a)은 (i) 규제된 배출 제한과 수행 표준, (ii) 배출권거래제 또는 오프셋과 같은 시장기반 메카니즘, (iii) 산업을 위한, 이행 기금을 포함하여, 지출 또는 연간 장려정책, (iv) 주, 준주 또는 다른 정부들과의 협력 또는

77) 제9조(2)

협정과 관련하여 취하여진 조치들을 포함하여 국가감축의무와 목표계획이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곧 제5조에 규정된 감축의무와 제6조에 규정된 목표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에 관하여 규정이다. 제10조에 따르면, 10년마다 온실가스감축을 위하여 시행한 각각의 조치들에 의해 기대되는 온실가스배출감축량, 온실가스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년과 그 배출수준에 대하여 문서로 준비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적절한 방법으로 그 문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온실가스규제에 관한 관할권은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온실가스규제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 동시에 주정부도 그에 대한 관할권을 일정부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는 주정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보다 엄격한 목표계획을 규정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에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법 하에서 규정된 규제를 위반한 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고 당해 규정에 의하여 처분도니 벌금 또는 징역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개인이 당해 규정에 의해서 반복해서 유죄결정을 받는다면, 위반에 대한 벌금은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고,⁷⁸⁾ 1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를 범하거나 계속하는 경우에는 날마다 별개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각 날마다 별개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⁷⁹⁾ 이 법에 따른 규제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법원은 그 금전적 이익의 총액과 같은 총액을 추가적인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환경과 경제에 관한 국가원탁회의는 (a) 지속가능한 개발에 따라 목표 계획 또는 개정된 목표 계획에 관한 연구를 착수하고 정보를 수집

78) 제12조(2)

79) 제12조(3)

하고 그러한 계획들을 분석하여야 하고, (b) 환경과 경제에 관한 국가원탁회의법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목적 내에 있는 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그것의 목적 내에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장관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i) 제안된 조치들 각각이 그 성명서에 계획된 배출량감축을 성취할 가능성, (ii) 제안된 조치들이 5조에 따라 캐나다가 그것의 의무감축을 충족하고 6조에 규정된 잠정적인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충족할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iii) 환경과 경제에 관한 국가원탁회의가 관련된 것으로 고려한 다른 조치들.

제 4 장 캐나다 기후변화 대응법제의 시사점

2007년 4월에, 캐나다 정부는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행동계획과 온실가스통제를 위한 규제 체계의 윤곽을 잡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규제 체계는 모든 주요한 새로운 그리고 기존의 산업 배출원으로부터 온실가스의 배출 강도(intensity)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⁸⁰⁾ 온실가스 강도는 국내총생산 달러당 온실가스배출량에 관하여 산정된다. 기존의 시설들에 대하여, 이 규제 체계는 2010년에 2006년 배출-농도 수준으로부터 18%의 초기 집행할 수 있는 감축량을 포함하고 있다.⁸¹⁾

그 후에 매년, 2퍼센트의 배출농도 개선이 요구될 것이다. 새로운 시설들에 대하여, 이 규제 체계는 새로운 시설의 운영이 시작한 후에 처음 3년 동안 의무적인 2퍼센트의 연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⁸²⁾

산업 시설들은 온실가스 규제 체계에 따라 그 시설들의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몇 가지 옵션을 갖는다. 캐나다 정부는 온실가스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감축 행동의 이용을 장려하고 다른 준수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제한된 범위내에서, 배출원들은 기술 기금에 기여함으로써, 또는 조기 감축 크레디트를 통하여 준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게다가, 배출원들은 국내 및 국제적인 배출권 거래와 오프셋을 통하여 준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구체적으로 서부지역기후행동계획(Western Regional Climate Action Initiative)와 지역온실가스계획(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과 같은, 미국의 주-주도 거래제도와 가능한 연계를 모색할 계획이다.⁸³⁾

80) CANADIAN MINISTRY OF ENV'T., REGULATORY FRAMEWORK FOR AIR EMISSIONS iv (2007), http://www.ec.gc.ca/doc/media/m_124/report_eng.pdf.

81) Id.

82) Id.

83) Id. p.1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연방-주간 파트너십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전망을 시사한다. 84)첫째, 캐나다 환경보호법은 동등한 합의 방법은 헌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실질적인 수단이다.85)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모든 주들의 합의가 없다면 최소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알버타, 온타리오 그리고 퀘벡과 같은 주요 에너지 생산 및 제조업에 의존하는 주들의 합의가 요구된다.

주요한 합의들은 온타리오와 퀘벡에서 이루어졌다. 퀘벡은, 퀘벡에 대하여 만들어진 배출 목표에서, 저배출 수력발전에 대한 준의 의존을 승인한다. 그러나 알버타와 연방간 교섭은 어려웠다. 알버타는 헌법소송의 위협을 제기하였다. 2006년에 교섭이 계속되는 동안, 알버타 관리들은 그들의 우선사항은 알버타 기후변화와 배출관리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개발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그것의 주요 목적은 알버타주의 에너지 부문의 보호였다.

연방-주간 합의를 새로운 시설들에 대하여 이 스킴에 따라 대량최종배출자의 배출목표의 설정은 일련의 어려운 교섭이 필요할 것이다. 그 규제와 같이, 이러한 ‘최고로 이용가능한 기술 경제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들은 ‘주정부 그리고 지방영토정부와 협력하여 그리고 산업계와의 협의하여’ 개발되어야 한다.86)

또 다른 잠재적인 문제는 배출량거래가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량최종배출자들은 톤당 15 달러의 가격을 확보하고 온실가스기술투자기금크레디트중 톤당 15 달러(최소 연간 9 Mt)에 이용할 수 있다. 국제배출권크레디트에 관한 초기 불확실성뿐 아니라 초기

84) John C. Dernbach, Seema Kakade, CLIMATE CHANGE LAW: AN INTRODUCTION, ENERGY LAW JOURNAL, Volume 29, No.1, 2008 pp.14-15

85) Nigel D. Bankes & Alistair R. Lucas, Kyoto, Constitutional Law and Alberta's Proposals, 42 Alberta L. Rev. 355, 398 (2004).

86) Dept. of the Environment,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Notice of Intent to Regulat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Large Final Emitters, Can. Gazette Part I, Vol. 139, No. 29, July 16, 2005, at 2495.

비용효과적인 직접 배출 감축에 대한 편의성과 가능성이 있어, 대량 최종배출자들은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초기 시장에서, 이 기후기금은 주요한,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국내오프셋크레디트와 잉여대량최종배출자의 배출크레디트의 구입자가 될 수 있다.

제5장 결론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구온난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하기 시작하여 작성한 첫 번째 국제 조약인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비준하거나 가입하였다.

보다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그 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를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보다 영향력 있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이 의정서의 첫 번째 공약 기간은 2008년에 시작하여 2012년에 끝난다. 이것을 강력한 다자 협약으로 2009년까지 대체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2009년 제15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는 그러한 구속력 있는 문서를 채택하지 못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첫 번째 공약 기간과 새로운 레짐의 발효 사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Canada's National Implementation Strategy on Climate Change, National Climate Change Process (Gov't of Can./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 Ottawa), Oct. 2000
- Canada's National Report on Climate Change - 1994, <<http://unfccc.int/resource/docs/natc/cannce1.pdf>>
- CANADIAN MINISTRY OF ENV'T., REGULATORY FRAMEWORK FOR AIR EMISSIONS iv (2007), http://www.ec.gc.ca/doc/media/m_124/report_eng.pdf.
- Caroline Bracht & Sofia Viguri, 2009 Pittsburgh G20 Summit Compliance Report on Energy and Climate Change, G20 Research Group, <<http://www.g20.utoronto.ca>>
- Diana M. Liverman, Convention of Climate Change: Constructions of danger and the dispossession of the atmosphere,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Volume 35, Issue 2, 2009
- Environment Canada 1998-99 Estimates- A 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 <<http://dsp-psd.pwgsc.gc.ca/Collection/BT31-2-1999-III-16E.pdf>>
- Environment Canada, Turning the Corner: Detailed Emissions and Economic Modelling (Minister of Environment, March 2008)
- Frederic Beaugard-Tellier, Sam N.K. Banks, Kristen Douglas, Lynne C. Myers, BILL C-30: CANADA'S CLEAN AIR AND CLIMATE CHANGE ACT, LS-539E, Parliamentary Information and Research Service, 19 April 2007.

참 고 문 헌

- John C. Dernbach, Seema Kakade, CLIMATE CHANGE LAW: AN INTRODUCTION, ENERGY LAW JOURNAL, Volume 29, No.1, 2008
- Nigel D. Bankes & Alistair R. Lucas, Kyoto, Constitutional Law and Alberta's Proposals, 42 Alberta L. Rev. 355 (2004).
- Robert Dufresne, KYOTO PROTOCOL IMPLEMENTATION ACT: IMPLEMENTATION AND CONSEQUENCES, PRB 07-40E, PARLIAMENTARY INFORMATION AND RESEARCH SERVICE, 27 Nov 2007
- Robin Elliot, "Safeguarding Provincial Autonomy from the Supreme Court's New Federal Paramountcy Doctrine: A Constructive Role for the Intention to Cover the Field Test?" (2007) 38 Sup. Ct. L. Rev. (2d) 629.
- Shi-Ling Hsu, Robin Elliot, Regulating Greenhouse Gases in Canada: Constitutional and Policy Dimensions, McGill Law Journal, Vol.54, Autumn 2009
- Stanley de Smith and Rodney Brazier,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6th Ed., Penguin Books, London, 1990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ht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2007
- UNFCCC,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Data for the Period 1990-2006, p.16, Report No. FCCC/SBI/2008/12(Nov.17, 2008), < <http://unfccc.int/resource/docs/2008/sbi/eng/12.pdf>>
- Vision Green, Green Party of Canada, January 2010

< >

Canada's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Decreased in 2008, News Release, Environment Canada, April 15, 2010, <http://www.ec.gc.ca>.

Canadian Press, Kyoto Funds Shifted to Public Transit Tax Credits, CTV.ca, May 2, 2006, <http://www.ctv.ca/servlet/ArticleNews/story/CTVNews/20060502/budget_environment_060502?s_name=&no_ads>

Heather Tompkins, Climate Change and extreme wether events: Is there a connection?, Heather Tompkin Cicerone 3/2002, <<http://www.cicero.uio.no/media/1862.pdf>>

New Analysis Brings Dire Forecast Of 6.3-Degree Temperature Increase,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25, 2009, <<http://www.washingtonpost.com>>

Pembina Reacts: Government of Canada Accepts Science-Based Limit on Global Warming, July 8, 2009, <<http://climate.pembina.org/media-release/1856>>

Peter Lougheed, Address (delivered to the Canadian Bar Association, Calgary, 14 August 2007), <<http://www.cpac.ca/forms/index.asp?dsp=template&acr=view3&pagetype=vod&lang=e&clipID=96>>

President Obama and Prime Minister Harper vow joint effort on North American economic recovery, Leaders establish Clean Energy Dialogue, discuss global security concers, 19 February 2009, Ottawa, Ontario, <<http://news.gc.ca>>

참 고 문 헌

Prime Minister Stephen Harper Welcomes New Agreements with China
on Climate Change and Cultural Exchanges, 2009-12-03,
<<http://china.gc.ca>>

The MEF Technology Action Plans, <<http://www.majoreconomiesforum.org>>

<http://www.brucehyer.ca>

<http://www.climatechange.gc.ca>

<http://www.ecojustice.ca>

<http://www.foecanada.org>

<http://www.ec.gc.ca>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

<http://www.ecoaction.gc.ca>

<http://oee.nrcan.gc.ca>

< >

Canada (A.G.) v. Alberta (A.G.) (Reference Re Insurance Companies),
[1916] 1 A.C. 588, 26 D.L.R. 288 (P.C.)

Canada (A.G.) v. Ontario (A.G.), [1937] A.C. 326 at 351, [1937] 1
D.L.R. 673 (P.C.)

Friends of the Earth v. The Governor in Council and th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2008] F.C. 1183

Northwest Falling Contractors Ltd. v. R., [1980] 2 S.C.R. 292, 113
D.L.R. (3d)

Oldman River Case, [1992] 1 S.C.R. 3 at 64, 88 D.L.R. (4th)

R. v. Crown Zellerbach Canada Ltd., [1988] 1 S.C.R. 401, 49 D.L.R.
(4th)

R. v. Hydro-Quebec, [1997] 3 S.C.R. 213, 151 D.L.R. (4th)